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1009호 2014. 2. 3.(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-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----- 1

공 고

-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-109호 석남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
공람·공고 ----- 3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7호

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.

- 아 래 -

지구명	위 치	해제 내용			해제사유	비 고 (지정일자)
		유형	등급	면적(m ²)		
가정여중 주변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0번지 일원	침수위험	가	85,000	정비사업 완료	2004.02.09

붙 임 :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1부(안전관리과 비치)

2014년 1월 28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109호

석남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·공고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-296호(2009.09.21)로 지정된 석남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-111호(2013.12.02)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되었기에 같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·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. 2. 3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정비구역의 명칭 : 석남3주택재개발정비구역

2.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

가. 정비구역 해제 조서

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석남3주택재개발정비구역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92번지 일원	20,439.5	감)20,439.5	-	해제

나. 정비구역 해제 사유

구역명	변경내용	변경(해제)사유	비고
석남3주택재개발정비구역	정비구역 해제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	

다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환원에 관한 사항

-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
- 석남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한 정비계획(지구단위계획 포함) 폐지

3. 공람에 관한 사항

가. 공람기간 : 2014. 02.03 ~ 2014. 03.05(30일 이상)

나. 공람장소 : 서구청 도시개발과 (☎032-560-4772~3)

다. 공람내용 : 석남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

4. 관련도서 : 게재생략(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)

공 램 의 견 서

사 업 명	석남3주택재개발정비사업			
공람기간	2014. 02.03 ~ 2014. 03.05			
부동산 소재지				
제출인	성 명		주민등록 번호	- *****
	주 소		전화번호	
제출일				
<p style="margin-top: 0;">내 용</p>				